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57654 배당이의
원 고 00자산관리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장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 고 1. 박00
인천 00구 00동 ***-**-**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서정식

2. 대한민국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길수정

3. 윤00
인천 00 00동 ***-**-** ■■아파트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OO에 대한 배당액 84,000,000원을 42,246,79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87,420원을 0원으로, 피고 윤OO에 대한 배당액 3,579,0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819,67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박OO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인천세무서는 4순위 교부권자(부가가치세)로, 피고 윤OO은 5순위 근저당권자로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 각 금원을 배당받은 자들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박OO 보다 선순위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161201호로 마친 채권 채권고액 57,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저축은행(이하 'OO&&'라 한다)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OO&&로부터 이&&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2008. 12. 21.	OO&&가 이&&에게 일반자금대출로 3,800만 원 대출
2008. 12. 24.	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경료
2010.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2011. 2. 28.	배당요구종기일
2011. 6. 24.	매각기일(결과 : 유찰)
2011. 6. 29.	OO&&가 위 이&&에 대한 채권(당시 대출잔액 38,000,000원, 이자 4,970,191원)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
2011. 6. 30.	OO&&가 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 통지
2011. 7. 19.	원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
2011. 7. 29.	매각기일(결과 : 매각)
2011. 8. 5.	매각결정기일(결과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11. 9. 23.	대금지급기한(결과 : 납부)
2011. 9. 23.	이 사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원고(양도인 : OO&&은행)’에게 배당기일 통지서 발송
2011. 9. 28.	원고에게 위 배당기일 통지서 도달
2011. 9. 29.	원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45,819,670원의 채권계산서(원금 38,000,000원 + 이자 7,819,670원) 제출
2011. 10. 24.	OO&&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
2011. 10. 26.	배당기일(결과 :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OO,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박OO, 피고 대한민국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것으

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당시 OO&&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OO&&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OO&&가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OO&&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배당기일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한다.

3. 피고 윤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선순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윤OO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윤OO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배당표는 생략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000시 00동 ***외 @필지 ◎아파트
제1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5층 제1503호 84.93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000시 00동 ***외 @필지 ◎아파트

2. 경기도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9457분의 26.791

(이상 의정부지방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관할)